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22. 2. 1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양의원영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진선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22. 2. 1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홍영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프로그램

▶ 일 시 2022. 2. 10. 14:00 ~ 16: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유튜브 실시간 중계 - 수어/문자통역)

▶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홍영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주 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진 행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시 간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5	내·외빈 인사 말씀
14:15~14:20	사진 촬영
14:20~14:35	<발제1>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쟁점과 판결의 법리적 의의 : 김보라미 (변호사,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
14:35~14:50	<발제2>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판례의 흐름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의 : 박한희 (변호사,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4:50~15:00	휴식 시간
	<토론>
	-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5:00~16:00	- 이은실 (순천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이은실 교수 토론에 대한 트랜스젠더 당사자 의견 진술 - 황예원(국제NGO 활동가)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이 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16:00~16:30	질의응답 및 폐회

■ 목 차

발제1	성소수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판결의 쟁점 및 의의	
	- 故 변희수 하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의 평석을 중심으로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	04
발제2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판례의 흐름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의	24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문	트랜스젠더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0
	트랜스젠더 인식 개선과 법적/제도화 과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56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62
	여성으로 살아남아 노동자로 인정받기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유아인권팀 팀장)	72
	트랜스젠더가 처한 군대 이슈의 현황과 과제	
	-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 관련 상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88

발제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

발제2.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故 변희수 하사 1주기로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성소수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판결의 쟁점 및 의의
- 故 변희수 하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의 평석을 중심으로 -

김보라미

| 변호사 / 법률사무소 디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던 고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의 승소판결을 보지 못한 채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지 1년여 되어 간다.

고 변희수 하사의 승소판결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으로 보고 전역처분한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여 고인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이 판결은, 향후 다른 영역에서의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에 따른 법적 관계,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가시적으로 구속력있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서¹⁾,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 판결의 개요

가.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²⁾

가) 고 변희수 하사(이하 “망인” 이라고만 한다)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2017. 3. 1. 의무복무기간 4년 (만료일 2021. 2. 28.)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중수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경부터 정신과, 가정의학과 진료 후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여 왔고, 2017. 5. 27. 민간병원에 내원하여 ‘성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5. 1.부터 국군양주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

1)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년 11월, 제101면

2) 판결문상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아왔고, 2019. 9. 19. 국군수도병원 담당군의관은 ‘상세불명의 성주체성 장애’ 등을 진단하였다.
- 라) 망인은 2019. 10. 8.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여행기간과 목적(의료, 수술), 수술을 진행할 종합병원명 및 회복을 위한 숙박 장소, 수술 및 회복 및 소독 일정이 기재된 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9. 10. 14.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여단장의 허가를 받았다.
- 마) 망인은 2019. 11. 29. 태국 라즈부라나 종합병원에서 양측고환절제술 및 여성성기 재건술(이하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 바) 망인이 태국으로부터 성전환수술 이후 귀국한 후 2019. 12. 23.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상기 환자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으로 태국에서 성전환수술 시행한 분으로 본과적인 진찰결과 현재 여성의 외부성기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 취지의 진단을 하였다.
- 사) 의무조사위원회는 2019. 12. 26. 망인에 대하여 ‘병명 : 고환의 결여 및 무형성, 성전환증’,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 음경상실³⁾ 5급, 고환결손⁴⁾ 5급, 합계 최종 3급’ 이라고 결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통보하였다.
- 아) 2020. 1. 9. 비전공상을 의결하였다.
-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21. 피고에게 ‘원고의 성전환수술 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 을 권고하였으나 무시되었다.
- 차)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1. 22. 변희수를 전역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2020. 1. 23.자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내용

- 처분명 : 부사관 심신장애 대상자 전역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 법적 근거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 적합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심신장애 전역 등의 기준)

3)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320. 음경상실 가.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약물치료나 주사요법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326.

심사내용5)	
<p>의무조사위원회 소견</p>	<p>현재 건강상태 :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함</p> <p>향후 치료/예후 : 외부상처는 치유될 것으로 보임</p> <p>군 복무간 제한 사유 :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는 없으나, 공동생활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여성복무자의 기준에 합당할 것으로 보임</p> <p>의학적 생존율 : 해당없음</p>
<p>위원회 논의사항 (당사자에 대한 질답)</p>	<p>Q. 수술후 지금 회복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p> <p>A. 지금이라도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다.</p> <p>Q. 현재 몸 관리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가</p> <p>A. 3주에 한 번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p> <p>Q. 3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 복용하는 약은 없나</p> <p>A. 없다.</p> <p>Q. 군복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가.</p> <p>A. 어릴 적부터 애국심이 많은 편에 속한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 생각하였고, 남자 여자가 중요하지 않고 한 몸 바쳐 충성하고 싶다.</p> <p>Q. 최종진술하기 바란다.</p> <p>A. 중학교 시절부터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면 확인가능하다. 꿈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전장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사관으로 지원하였고, 체력적인 단점을 극복하고자 인문계가 아닌 고등학교 부사관학과를 지원하였고 임관하게 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어려움을 이냈다.</p> <p>~중략~ 여단에서 군단으로, 군단에서 육군본부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대의 배려 속에 성별전환 수술을 받게 되었다. 부대에서 수술 이후 부대 재배치된다면 어느 부대에 근무하고 싶냐는 물음에 최전방으로 가겠다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당시 군단장님도 수술 이후 부대 재배치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셨고 허락해 주었다.</p> <p>성전환 군인이 단점은 있겠지만 바꿔 말하자면 용사들과 동고동락한 유일한 여군일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복무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인권을 존중하는 군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용사들이 핸드폰 사용이 허가되고 있고 영창제도도 폐지되는 등 인권친화적으로 군이 변모하고 있다.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p>

5) 심사내용은 당사자에게 통지된 내용이 아니고, 소송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소송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카) 청주지방법원은 2020. 2. 10. 망인에 대한 성별정정허가(신청인 2019. 12. 26.)를 결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성별정정허가결정(2019호기 10047)의 요지
<p>신청인의 성장과정, 특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육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입대한 후에도 부득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경위 및 그 내용,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정하고 수술을 받게 된 과정 및 성전환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신청인의 현재 마음가짐과 장래의 계획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출생후 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 형성된 경우 및 신청인의 전환된 성을 신청인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p>

타) 망인은 2020. 2.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9. 인사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파)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2020. 7. 29.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로 대한민국에 보내는 유엔 특별절차 서한에서 원고의 남성성기 제거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적 다양성을 병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위배되며, 원고에 대한 전역처분은 원고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⁶⁾ 또한 위 서한에서는 우리 정부에 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②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심사과정을 보류하지 않은 이유, ③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따라 한국 군 의료기관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성정체성 관련 건강을 재정의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및 트랜스관련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이 정신질환의 조건이 아니며 성별 불일치 진단이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적합 의료 서비스(gender affirming health care)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④ 남성성기의 제거가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⑤ 프라이버시 및 성 정체성을 보장하고, 트랜스 및 다양한 성의 군인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한 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2020. 9. 27.자로 위 서한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6)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d=25445>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우리정부에 보낸 유엔 특별절차 서한 중 일부

While we do not wish to prejudg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us, we are concerned that the Korean army may have considered the removal of Ms Byun’s male genitals as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giving ground for her discharge from the army under article 37 (1)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The conception of gender diversity as pathology is contrary to the eleventh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Moreover, the dismissal of Ms Byun would violate the right to work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e are also concerned that, if the dispute between the Army and Ms Byun is prolonged, she might lose opportunities to apply for a tenure in the army, which may put not only her job security, but her livelihood at greater risk.

- 하) 망인은 2020.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2. 14. 망인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성정체성 실현을 목적으로 자의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 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 하였다.⁷⁾
- 너) 망인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전인 2021. 2. 27. 사망하였다.⁸⁾
- 더) UN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스(Victor Madrigal-Borloz)는 2021. 3. 15. 故 변희수 하사의 유족과 친우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은 서한⁹⁾을 전달하였다.

7) 군인권센터 2021. 2. 1.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에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 결정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57>

8) 법원 판결에서는 사망일을 2021. 3. 3.로 적시하고 있으나, 2021. 3. 3.은 망인이 발견된 날이고, 청주 상당경찰서 사건조사보고서에는 사망추정시간을 2021. 2. 27. 17:43-21:25으로 적시하였다. 법원 판결의 사망일 표기는 발견일과 사망일을 혼동한 오기이다.

9) 군인권센터 2021. 3. 23.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고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에 첨부된 애도서한원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749>

**UN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로부터의 조건**

Dear Ms Byun Hui-Su's beloved family and friends,

I would like to express my condolences for the loss of Ms Byun Hui-Su. My team and I were shocked and deeply saddened to hear about her passing. She was a courageous woman who never faltered in her determination to fight f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Her bravery in coming forward will always inspire, and hopefully empower oth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eyond.

We want you to know that our thoughts and best feelings are with you at this difficult time.

May you find comfort in the memory of her exemplary life.

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잔여복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을 근거로 2021. 4. 5. 이 사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다.

2) 소송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2021. 10. 27. 확정되었다.

2020구합104810 사건 중요 진행내용

- 2020. 8. 11. 소장접수
 - 2020. 11. 17.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2021. 2. 2.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 2021. 2. 9.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21. 2. 26. 피고의 실질적 답변서 제출
 - 2021. 4. 5.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서 제출
 - 2021. 4. 15. 1회 변론기일
 - 2021. 5. 13. 2회 변론기일
- 재판장 판사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된 문서송부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
 속행 사유 :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추가 문서송부촉탁신청¹⁰⁾ 및 피고의 증인신청검토를 위하여
- 2021. 7. 1. 3회 변론기일
- 재판장 판사의 피고가 신청한 국군수도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군수도병원에서 제출된 문서제출명령 회신¹¹⁾이 도착되었음을 고지
 속행사유 : 쌍방 추가 증거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서송부촉탁 회신을 위하여
- 2021. 8. 19. 4회 변론기일
- 재판장 판사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된 문서송부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
- 변론종결**
- 2021. 10. 7. 판결선고기일 - 원고 승소
 - 2021. 10. 27.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1. 10. 27. 확정

나. 대상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단요지

대상판결의 재판부(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판사 김동욱)는, 성전환수술을 하는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여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소송수계의 적법성을 수긍하고, 이 사건 전역처분은 여성에 대하여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각 쟁점별로 판단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송수계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도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성정체성¹²⁾의 혼란 또는 성별불일치의 인식¹³⁾**

- 10) 2회 변론기일에 고지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서송부서의 자료 중 사생활과 무관한 부분들인 피고 관계자들의 진술부분, 심사관련 소견부분, 불의의 사고로 전역심사에 회부하여 전역처분사태 및 비율, 3년간 심신장애 전역심사를 통해 전역현황, 군인사법 시행규칙 담당자 통화내용, 사건조사결과보고 등도 마스킹 처리되어 도착하여 마스킹 부분을 추가 문서송부촉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4회 변론기일에 고지된 문서송부서에서 “심사관련 소견부분”은 비밀투표의 형식으로 실시된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여 비공개처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나머지 부분은 원래 가독성이 높지 않은 부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서를 공개하였다.
- 11) 피고는 2021. 5. 24. 각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세는 성주체성 장애, 성전환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것이고 이 사건 심신장애가 위 성주체성 장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세 및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세 및 성주체성 장애 관련 진료 내역은 위 각 의료기록 및 요양급여내역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그 취지로 적시하였다. 피고 주장의 성주체성 장애와 정신건강을 엮은 논증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18. 6. 22. 국제질병목록(ICD,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에서 제외된 성주체성 장애(gender dysphoria)를 정신병력으로 언급하여 법의학적으로도 오류이나, 이 판례평석에서는 이는 쟁점이 아니므로 피고의 재판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기 위하여 각주에서만 적시하였다. 원고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성주체성 장애를 전역의 차별/배제 사유로 언급하며 준비서면의 대부분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에 대하여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 12) 판결에서는 성별정체성, 성주체성 등으로도 사용되나 특별한 구별없이 편의상 성정체성이라고 칭하

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2)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여부

관련규정
<p>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p> <p>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p>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¹³⁾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한다고</p> <p>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p>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20. 음경상실, 326 고환결손</p>

였다. 소송중에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구별이 언급되었으나, 판결문에서는 쟁점이 아니어서 일괄표기 되었다.

- 13)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 법규로서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8 사건(소위 “피우진 사건”)을 근거로 다투어진 바 있으나, 대법판결의 각주 5)에서는 “(이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해석상 다툴 여지를 제거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둔 위임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8 사건의 판결이유 중 일부
<p>구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①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 작전의 수행에서 벗어나 기술전, 정보전, 과학전으로 진화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하여 보아야 하는 점, ② 시행규칙상의 심신장애등급의 분류는 의학수준의 발전에 따른 치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악성 종양의 경우 초기의 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진행성 암으로 분류하여 심신장애등급 2급</p>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쪽의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후 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 형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법률적인 성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성징도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전환된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정체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고,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도 출생 시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① 망인이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전환증을 상당기간 겪어오다가 성전환수술에 이르게된 점, ② 망인에 대한 성전환수술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술후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성전환수술 후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망인을 여성으로 보는 것이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법원도 성별정정 허가한 점, ⑤ 망인은 성전환수술 직후 성별정정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변희수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심신장애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③ 심신장애의 원인, 군 구성원 개인 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의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심신장애등급이 1 내지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원고의 주치의인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소외인은 원고가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방 전 절제술을 받은 후에 받은 정기체력검정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당시 변희수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는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음경상실, 고환결손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희수의 성전환 수술 후 음경수술,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3) 입법적, 정책적 결정 문제

대상판결은 다만 이 사건 망인과 같이 남군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전환된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나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나머지 쟁점들(전환후 다른 심신장애 사유유무, 전환된 여성의 현역복무가능성, 계속 현역복무 허용여부 등)을 구별하여 언급하였다.

2. 이 사건 판결의 평석

대상판결에서는 “성전환 수술 후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도 소의 이익을 검토하여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였으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트랜스젠더의 성적 정체성의 판단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요소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그 판단의 구체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법원의 해석의 한계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에 대하여 입법론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여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고려할 것을 정책과제로 남겼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가. 소송수계 판단 부분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수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소송수계절차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에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선례를 내세우며 급여청 구권은 본질적이지 않거나 반사적 이익이라며 이 사건 소의 각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반하여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급여청구권”을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¹⁴⁾해 왔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언급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급여청구권” 이외에도 “성정체성의 혼란 또는 성별불일치의 인식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위법처분의 반복 가능성도 소익의 인정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및 스스로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피해가 은닉되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있어서 성소수자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점은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 성적 정체성의 판단

사전 절차였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9. 망인의 ‘성별이 여성이고 성별정정절차를 진행중인 소청인¹⁵⁾에 대하여 남성임을 전제로 진행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심신장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법률적 성별정정이나 전역심사 시기에 영향을 받는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여, 성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에 반하여 성적 정체성의 판단근거를 구체적 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예시적으로 적시하며 **법원의 성별정정전에도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단하여 성별정체성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대상판결은, ①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에 따른 수술 후 회복된 과정, ③ 신체적 기능에 특별한 기능장애가 초래되지는 않고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등 성정체성의 인식 여부, ④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및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¹⁶⁾, ⑤ 피고가 성별정정허가를 알고 있어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근거로,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을 전환한 경우 전환후의 성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주치의 이은실 교수의 전문가 진술서상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복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그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1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판결, 대법원 2009.1. 30. 선고 2007두15748 판결 등 다수

15) 고 변희수 하사

16) 법원의 성별정정허가는 사회규범적으로 판단가능한지의 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망인의 주치의 이은실 교수의 전문가 진술서 내용

- ① 원고의 성확정수술이후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며 출혈이나 염증은 상당히 호전되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었다.
- ② 원고의 성확정수술이후 호르몬치료는, 이성의 여성도 조기폐경시 받는 치료로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와 동일하였다.
- ③ 원고가 받은 호르몬치료는 환자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필요한 치료로, 전차조종수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치료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동의하며 판결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식가능성”을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더라면 좀 더 명확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즉, 피고는 이미 성전환수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성별정정신청의 인식가능성은 보완적인 사정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법원의 역할과 입법론

이 사건 전역처분은, 대상판결에서, UN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의 2011. 6. 17.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라는 제목하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결의안¹⁷⁾,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률과 관례 및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Doc. A/HRC/19/41, 17 November 2011)’ 보고서¹⁸⁾,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미 연방대법원의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¹⁹⁾²⁰⁾ 등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로 해

17) 우리나라 정부도 위 결의안의 채택에 찬성하였다.
 18)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방지(discrimination in employment)를 포함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19) 김영진,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 미국 연방대법원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021, vol. 45, pp.54-55 “법정의견은 고용주가 남성 동성애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예시하는데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있을 때 만일 남성 근로자가 남성에게 끌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일한 이유로 그를 해고한다면 여성 동료에게는 허용되는 특성으로 그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즉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성별에 기반을 두고 해고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선별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성별이 해고의 직접적 원인(a but-for cause)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정의견은 출생시 남성의 정체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를 고용주가 해고하는 상황도 똑같이 예시하는데 이 또한 출생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동료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특성으로 출생시 남성의 정체성이 있었던 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개인적 성별이 해고 결정에서 확실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 인권위원회 역시 “다른 부사관들과 동일한 집단에 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다른 부사관과 달리 전역 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이는 동일 집단 속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망인의 진정사건 상정사유 및 소위 논의사항에서 이 사건 전역처분이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쟁점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법적, 정책적 결정 문제라고 추가적인 서술을 하였다.

그러나 3년간 심신장애 3급 이상 전역 의결 현황을 보더라도 망인과 비슷하게 3급 이상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강제전역시킨 경우가 없고,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 복무가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전역처분은 이례적인 처분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특히 전역심사과정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과 약을 먹어 정상적 임무수행이 제한된다”거나, “성전환수술 후 부대에 융합하기 어렵다”는 차별적 논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피고측의 관계자도 전역심사서에서 “이 사건 전역처분이 성전환자에 대하여 군복무를 계속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여 차별조치로서 전역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이 명백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은 쟁점으로 적시되지 못하였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물론, 법원 판결의 취지는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대상판결에서 현행법에 따르면이라도 차별적 조치라는 점이 적시되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라.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현재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전환수술에 따른 호르몬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은 성형수술을 포함한 모든 성전환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시키면서 미의사협회는 이에 항의하며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군복무로부터 배제할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18. 4. 12. 자 미 상원 국방위원회 육군성 청문회²¹⁾, 2018. 4. 19. 자 미 상원 국방위원회 해군성 청문회²²⁾, 2018. 4. 24. 자 미 상원 국방위원회 공군성 청문회²³⁾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은 일관되게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21)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육군성의 기본 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12 자 속기록 p.94, pp.99-101
22)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해군성의 기본 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19 자 속기록 pp.81-85
23)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공군성의 기본 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24 자 속기록 pp.71-73
24) Admiral은 제독, General은 해병대 사령관이므로 사령관으로 번역

2018. 4. 12.자 비상원 국방위원회 육군성 청문회 녹취록 중 일부

Gillibrand 상원의원: 장관께서는 이후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부대단결성을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해 들으신 바 있습니까?

Esper 국방부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게 올라온 바는 없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Milley 장군님,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Milley 육군참모총장 : 아닙니다. 없습니다. ... 저희에게는 특정한 수의 트랜스젠더 장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실제로 그들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고 있는지 우려가 있고 그렇게 대우받도록 도록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0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

Gillibrand 상원의원: 알겠습니다.

Milley 육군참모총장: ... 단결, 기강, 사기 그리고 그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없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좋은 소식이군요.

2018. 4. 19.자 비상원 국방위원회 해군성 청문회 녹취록 중 일부

Gillibrand 상원의원: Richardson 해군참모총장과²⁴⁾ Neller 사령관님, 지난 주에 Milley 국방부장관이 제게 말하길, 인용하면, “육군에서 트랜스젠더공개복무의 결과로서 단결, 기강, 사기 그리고 그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0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군님들께서는 트랜스젠더공개복무로 말미암은 부대단결성, 기강문제 또는 사기 관련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Richardson 해군참모총장: 의원님, 그 점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군 장병(sailor)이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그런 해군 장병들을, 무관하게, 미해군 군복을 입음으로써 보장되는 존엄과 존중으로 대합니다.그런 관점에 의해서, 저는 어떠한 문제도 알지 못합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Neller 사령관님?

Neller 사령관: 의원님, 보고에 따르면, 자기가 밝힌 해병 대원(marine)들은 ... 27명의 해병 대원과 복무 중인 한명의 해군 장병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혔고 ... 저는 그런 분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Neller 사령관님께서 트랜스젠더 병력 중 아무나 만나볼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Neller 사령관: 그렇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그런 회동에서 무엇을 알게되었나요?

Neller 사령관: 저는 ... 저는 그들이 했던 많은 경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 4명을 만났습니다 ... 사실, 한 명은 해군 장교였고, 한 명은 육군 하사관이었고, 한 명은 해병 장교였고, 한 명은 해군의 무병이었고 ... 저는 그들의 복무에 대한 의지(desire)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타고난 성과 반대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진솔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지를, ... 해군참모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 그들의 복무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제 아는 한, 배치에 준비되고 갖춰져 있었고, 그들이 ... 그들의 특정 직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한에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감사합니다, Neller 사령관님, Richardson 제독님, 인 사상 그리고 부대 수준에서, 백악관으로부터 나온 이번 새로운 정책 에 비추어서, 준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장병과 해병 대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부담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Richardson 제독: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 해군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파병 할 수 있는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군 장병, 방대 한, 우리 해군 장병의 압도적 다수가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여성을 잠수함부대에 함께 복무시켰을 때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중 하나는 그 해군 장병들을 훈련하는 우리의 접근에서 부각되는 차이가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프로그램은 정말 잘 운영되었습니다.
2018. 4. 19.자 미상원 국방위원회 해군성 청문회 녹취록 중 일부
Gillibrand 상원의원: 안녕하세요, Goldfein 공군참모총장님.안녕하세요, 장 관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ldfein 공군참모총장님, 지난 2 주동안, Milley 국방부장관님, Neller 사령관님, Richardson 해군참 모총장님이 제게 말씀해주시길, 트랜스젠더 공개복무로 말미암은 각 군의 단결, 기강, 사기에 대한 보고가 0건이었다 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트랜스젠더 군인 공개복무로 인하여 생긴 공군 내 부대단결성, 군기 또는 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문제든지 알 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Goldfein 공군참모총장: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의 원님, 없습니다. 저는 일선 지휘관들, 선임하사관들(상사), 선임부사 관들과 대화를 나눠봤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올바른 수준의 지침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 해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 군인과 만나보셨습니 까?
Goldfein 공군참모총장: 예,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Gillibrand 상원의원: 그러면 그런 회동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Goldfein 공군참모총장: 여러 복합적인, 하나는, 각자가 가진 복무에 대한 다짐, 그리고 둘째로는, 얼마나 각 특정 사건이 개별적(individual) 인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접근법이 아니란 점입니다. 각 개 인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우리가 이를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지휘관들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위 청문회에서 미 해군 리차드슨 제독은 “여성을 잠수함 부대에 함께 복무시켰을 때의 교훈과 트랜스젠더 해군 장병들을 훈련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 훈련 프로그램은 그간 잘 운영되었다” 라고 증언하여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즉, 위 각 군의 미 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 자료를 통하여 성전환자들의 복무실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트랜스젠더군인이 군 활용성과 필요성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과학적인 미신에 가까운 편견

이외에는 이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2021. 1. 25. 포용적인 군대가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정체성에 근거하거나 성정체성과 관련된 상황에 따른 비자발적인 분리, 전역 및 재입대 혹은 계속 복무 거부를 즉시 금지” 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²⁵⁾ 위 행정명령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미 백악관은 랜드 보고서의 연구결과²⁶⁾를 인용하여 “미트랜스젠더 군인 때문에 군사대비태세나 의료비용에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전 효과성, 부대결속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마. 대상판결에 제출된 의견서 및 탄원서들

대상판결에는 고 변희수 하사의 뜻에 동참하는 단체, 개인들 다수의 탄원서들, 전문가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와 탄원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1) 2021. 5. 18.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 탄원서

2) 2021. 6. 18.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문가의견서

3) 2021. 7. 1. 총 4213명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취소를 위한 시민탄원인들의 탄원서

4) 2021. 7. 6. 국회의원 장혜영 의견서

5) 2021. 8.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문가 보충의견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대위 의견서, 다음 의견서, 더불어 민주당 성소수자 위원회 준비모임 의견서, 미래당 의견서, 여성민우회 의견서,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의견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견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견서

6) 2021. 8. 경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외 2인의 전문가진술서

25) 미 백악관 2021. 1. 25.자 보도자료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무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5/executive-order-on-enabling-all-qualified-americans-to-serve-their-country-in-uniform/>

26) Agnes Gereben Schaefer, Radha Iyengar, Srikanth Kadiyala, Jennifer Kavanagh, Charles C. Engel, Kayla M. Williams, Amii M. Kress,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2016,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30.html

- 7) 2021. 9. 3. 국회의원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류호정, 박주민, 배주민, 심상정, 양이원영, 용혜인, 윤미향, 이상민, 이은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용표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들의 탄원서

- 8) 2021. 9. 28.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경서,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의 탄원서

3.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규범적으로 성별정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성 소수자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반복적인 위법처분에 대하여 소수자 보호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진행과정 중 피고는 성전환자는 부대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거나(2021. 2. 28.자 준비서면 제22면)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위 준비서면 제28면), 트랜스젠더 병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면 다른 장병들의 임무수행이 곤란해져 다른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다(2021. 5. 7.자 준비서면 제39면)는 등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망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망인을 모욕하는 형태의 2차 가해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과정 중 이러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표현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1심 판결 이후 법무부에 피고의 위와 같은 변론태도야 말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포기지휘를 하여 그 문제를 긍정한 바 있다. 소송과정 중 드러난 인신공격적 변론태도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권침해적 시각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조치들이 시행되었어야 했음에도 군에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소식은 들은 바 없다.

대상 판결은 피해자가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된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판결문의 행간에서 미안함, 슬픔, 그리고 안타까운 감정이 느껴진다.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년 11월, 제101면
군인권센터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에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57>
- 군인권센터 2021. 2. 1.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인권위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환영」에 첨부된 국가인권위원회 제20차 전원위원회 결정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57>
- 군인권센터 2021. 3. 23.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고 변희수 하사 애도 서한 전달」에 첨부된 애도서한원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749>
- 김영진,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 미국 연방대법원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021, vol. 45, pp.54-55
- 미 백악관 2021. 1. 25.자 보도자료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무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5/executive-order-on-enabling-all-qualified-americans-to-serve-their-country-in-uniform/>
-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육군성의 기본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12 자 속기록
-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해군성의 기본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19 자 속기록
- 미합중국 상원 국방위원회, 「2019년도 국방수권법 요청 및 미래국방계획 검토에 대한 공군성의 기본입장 진술 청취를 위한 청문회」 2018. 4. 24 자 속기록
- Agnes Gereben Schaefer, Radha Iyengar, Srikanth Kadiyala, Jennifer Kavanagh, Charles C. Engel, Kayla M. Williams, Amii M. Kress,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2016,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30.html
-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lid=25445>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판례의 흐름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의

박한희

|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들어가며

“피고(육군참모총장)이 망 변희수에 대하여 한 2020. 1. 23.자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021. 10. 7.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는 위와 같이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이루어진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적인 요지는 간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전역처분을 내릴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률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남성에 적용되는 심신장애사유인 ‘음경/고환상실’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변희수 하사가 커밍아웃 후 육군이 심신장애라면서 전역심사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역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이미 지적되어온 내용이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결은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논리를 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술하게 지적되어 온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확인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법원의 당연한 판결이 너무나도 지체된 것은 분명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소제기가 이루어진지 9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히고 1년 2개월 만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지연된 정의로 인해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받는 자리에 변희수 하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을 모두가 느껴야 했다.

그렇기에 해당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이상 누군가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원하는 삶을 자신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법원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판결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2.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례의 흐름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와 그 존재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1년 하리수가 방송광고에 출연하면서부터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트랜스젠더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해왔고, 이는 주로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78년에는 인터섹스에 대해 성전환수술을 실시한 기사가 보도¹⁾되었으며, 1990년에는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아 최초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 여성 무용수의 기사²⁾가 보도되는 등 70~80년대에 들어서 성확정수술을 통해 신체외관을 변경한 트랜스젠더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성별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즉 법적 성별정정에 관한 사건들이 점차 법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 차례의 성폭행 사건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판례들을 주요 시기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가. 1980년대 말 ~ 1990년대 : 성별정정 허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결정

한국에서 최초로 법적 성별정정을 허용한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1989.7.5.자 89호파299 결정이다.³⁾ 다만 이 결정은 인터섹스에 대한 것으로서 법원은 “성염색체 이상증”의 진단서가 첨부돼 남성으로서의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을 뿐 아니라 호적판결은 신청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을 갖춘 이상 일상생활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고 그 이유를 설시했다.⁴⁾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0. 4.19.자 90호파71 결정은 성확정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외부성기의 구조 및 정신의학적 상태로 볼 때 사회적, 법률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전학적상의 염색체에 의한 성 구분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 있을 경우 군 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 권리의무 행사에서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며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그밖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2.18.자 94호파1057 결정,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7.3.자 2001호파997, 998 결정, 광주지방법원 2004.12.15.자 2003브20 결정 역시 성확정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또는 인터섹스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에 비해 서울가정법원 1987.10.12.자 87호파3275결정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

1) “性轉換(성전환)수술 機能的(기능적)교정 可能(가능)하다”. 경향신문 (1978. 7. 19.). 4.

2) “性(성)전환수술은 질병 치료술”, 동아일보, (1990. 6. 29.), 16.

3) 오미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4(3) (2013), 164

4) 생식기, 염색체, 성선 등의 특징성이 남녀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람인 인터섹스의 경우 (인터섹스가 아닌) 트랜스젠더와는 다른 기준에서 성별정정이 이루어진다.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역시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조 제2항)”고 하여, 인터섹스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술로 외형상이나 성격상 여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성별정정을 불허하였다. 그밖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0.6.7.자 90호과 98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6.29.자 90호과451결정, 광주지방법원 1995.10.5.자 95브10 결정 등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성별정정을 불허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말부터 법적 성별정정 사건이 법원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법률이나 대법원예규 등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⁵⁾

나.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

이렇게 개별 법원에서 엇갈린 성별정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성확정수술을 받았으나 법적 성별은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당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피해자가 비록 성확정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인간의 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전적 요소 외에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앞서 본 서울가정법원 87호과3275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성별을 평가함에 있어 성염색체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설령 외과적 수술을 받고 수십 년을 성별정체성에 맞게 살더라도 결국은 그 성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대법원의 이 판결은 그만큼 당시 법원 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의 대법원 성별정정 결정

5)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에 성별정정 현황을 요구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2000. 1. 1 ~ 2003. 8. 31.의 기간 중 총 61건의 성별정정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건의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 10건은 인터섹스, 20건은 단일성징을 지닌 트랜스젠더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염색체를 핵심으로 두고 트랜스젠더의 법률상 성별을 판단했던 대법원의 기준은 2000년대 이후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고 두 차례 성별변경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⁶⁾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06.6.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최초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정체체성의 인식 아래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전환자는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염색체라는 생물학적 요소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이른바 ‘진정한 성전환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시한 것과 이후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제시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은 ① 생식능력이 없을 것, ② 외부성기 등 신체외관이 변경되었을 것, ③ 정신과 진단, ④ 성년자일 것 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어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⁷⁾ 한편 대법원은 2011.9.2.자 2009스117 결정을 통해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트랜스젠더에게 불가능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다.⁸⁾

라.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제한된 조건하에서나마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강간이 다시 문제가 된 사건에서도 1996년과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 1996년 사건과 비슷하게 성확정수술을 받았으나 법적성별은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간 피해를 당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4스42 결정의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었고, 성인이 된 후 의사의 진단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수술 이후 30여 년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현재도 여성으로

6)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934, 발의일 2002. 11. 4.);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5155, 발의일 2006. 10. 12.)

7) 현행 성별정정 기준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은 홍성수 책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참조

8) 윤진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서울대학교 법학 61(3) (2020) 15~21

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여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2006년 결정과 마찬가지로 성염색체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하여 성별을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후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함에 따라 위와 같이 형법상 트랜스젠더의 성별이 문제되는 사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마. 2010년대 이후 : 성별정정 판단기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리는 결정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트랜스젠더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에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외부성기수술을 비롯한 성확정수술의 경우 그 건강상 부담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을 하는데 있어 큰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3.15.자 2012호파4225 결정을 통해 외부성기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동일한 취지의 결정들이 이어졌다.⁹⁾ 또한 2017년에는 외부성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 결정이 나왔으며¹⁰⁾, 2021년에는 생식능력제거를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¹¹⁾

외부성기 외에도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성별정정 결정, 가령 부모동의서 없이 성별정정 허가¹²⁾, 미성년자의 성별정정 허가¹³⁾, 미성년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¹⁴⁾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대법원이 요구하는 성별정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전제하에서 트랜스젠더의 구체적 삶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모두 하급심 법원의 결정들이기에 대부분이 개별 사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현재 법원에 따라 서로 엇갈리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3.26.자 2012호파2612 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자 2013호파1430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4.3.31.자 2014호파61** 결정(사건번호 뒤 2자리 미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5.2.자 2014호파1153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4.5.8.자 2014호파1681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4.6.26.자 2014호파3341 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7.18.자 2014호파1356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4.8.5.자 2014호파4037 결정, 제주지방법원 2015.4.14.자 2015호파345 결정 등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2.14.자 2015호기302 결정
11) 수원가정법원 2021.10.13.자 2020브202 결정
12) 인천가정법원 2019.7.1.자 2019브6 결정
13) 대구가정법원 2019.4.22.자 2018브21 결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0.자 2017브6 결정

바. 소결

이상과 같이 성별정정 결정과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사법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염색체라는 생물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곤 했으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목소리를 냄에 따라 점차 그 판단 기준이 정신적, 사회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는 하급심 판결이지만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법 앞에 인정받고 이에 맞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여 외부성기수술, 생식능력저거수술과 같은 가혹한 요건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등 그 논의들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트랜스젠더 인권 의제별 주요 판례들

위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트랜스젠더 인권 의제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변희수 하사 사건의 경우는 트랜스젠더가 직업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할 때 복무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해 2010년대 중반에는 트랜스젠더의 현역병으로서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병역법」에 따라 법적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스젠더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작동되는 병역제도 하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105명에게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45.7%(45명)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¹⁵⁾ 이에 대해 1999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으로 ‘성주체성장애’를 두었고¹⁶⁾,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은 정신과 진단서와 추가적으로 호르몬요법 기록 등을 제출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병무청이 병역기피 등을 이유로 하여 판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이에 따라 병역면제판정을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요법만이

15) 홍성수 책임, 앞 보고서, 223.

16) 해당기준은 2021. 2. 1.법령 개정으로 ‘성별불일치’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성주체성장애로 판정 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3~5급이 부여되었으나, 2021. 2. 1.부터는 성별불일치에 해당하면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아닌 생식능력제거, 외부성기수술 등 외과수술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무청은 이미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트랜스여성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병무청의 고발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법원을 통해 모두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가령 2012년 병역의무를 면제받고자 성주체성장애를 가장하고 15회 정도 호르몬요법을 받는 등 속임수를 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살아온 경험, 교우관계, 의료적 진단 등에 비추어 성주체성장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및 대법원에서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¹⁷⁾

한편 병무청은 고발에 더해 이미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05년에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한 트랜스여성에 대해, 2014년 병무청은 당사자가 외과수술을 받지 않았고 여성스런 외모를 갖추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병무청은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2015. 1. 29.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별다른 불편감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단지 병역의무 면제를 위하여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병무청의 병역면제처분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병무청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¹⁸⁾

이렇게 잇따라 법원에서 병무청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들이 나오에 따라 병무청은 결국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기준을 개정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병역기피 혐의로 트랜스젠더가 고발당하거나 면제를 취소당하는 일은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화장실 이용에서의 차별

성별에 따라 나뉜 화장실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간이다.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589명 중 40.9%(241명)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성별정체성과 다른 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했고, 39.2%(231명)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자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다.¹⁹⁾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이용을 강제당하는 것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법원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17) 대전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2고단389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7.9. 선고 2013노2652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9826 판결.

18)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3152 판결

19) 홍성수 책임, 앞 보고서, 219.

2019년 국가인권위는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요구한 학원의 행위를 성별정체성 차별로 보고 학원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명령을 내렸다.²⁰⁾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학원 수강 당시 성확정수술을 받았으나 법적 성별은 남성인 사람이었다. 이에 대해 수강 초기에는 학원 측에서도 진정인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항의가 있자 진정인에게 학원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국가인권위는 차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학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진정인이 다른 수강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그것이 진정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진정인의 이 사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고 보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²¹⁾

한편 위 사건의 진정인은 학원 측을 상대로 차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70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²²⁾ 이는 성별정체성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로 판단된다.

다.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화장실과 더불어 구금시설 역시 성별에 따라 분리된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자유형에 따른 제한과 더불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2003년 ‘성전환자 수용자 수용처우에 관한 지시’ 라는 내부가이드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라는 지침만을 두었을 뿐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5년 교도소에 수감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성별에 따라 남성 수용동에 수용되고 여성용 속옷 구매 등이 거부당하는 등 처우상 불이익을 받자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출소 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자해에 대한 교도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²³⁾ 또한 2014년에는 이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가 금치징벌을 받은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²⁴⁾

20) 국가인권위원회 2019.7.24.자 19진정0021200 결정.

21) 서울행정법원 2021.6.15. 선고 2019구합89043 판결.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10.27. 선고 2019가소12475 판결.

23) “트랜스젠더 수감중 자해 ‘국가 배상’...‘심리불안 상태인데 가위 건네’ 판결”, 한겨레 (2011. 1. 4.)

24) 광주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10493 판결.

한편 법원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잇따라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상 차별에 관한 결정들이 나오면서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19.3.20. 국가인권위는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가 구치소 수용 시 호르몬요법 등의 료적 조치를 거부당하고 원치 않게 여성수용동에 수감된 것에 대해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구치소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했다.²⁵⁾ 그리고 이를 수용하여 법무부는 2019. 7.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을 마련하고 2020. 4. 이를 수정하여 전국 교도소에 시달했다. 해당 방안은 트랜스젠더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수용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이 일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²⁶⁾

라. 소결

이상과 같이 2010년 이후로는 법적 성별정정 외에도 트랜스젠더가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06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4.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취소판결이 갖는 의의와 과제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번 전역처분취소 판결이 갖는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가. 성별정체성을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전역처분취소 판결의 근거는 변희수 하사가 전역처분 당시 법률적으로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역처분 당시 변희수 하사는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요법을 받고 성확정수술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법적 성별정정은 받지 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의 의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가정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대법원 2009도 3580 판결과 관련해서 이미 이야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 역시 가정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형사법원이 성별을 여성으로 판단

25) 국가인권위원회 2019.3.20.자 17진정0726700 결정

26) 다만 여전히 성소수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나 외부 의료전문가는 어떤 이들로 구성할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다는 한계는 있다.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은 장래효를 가지고 있다는 점²⁷⁾, 민법과 별도로 형법이나 행정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별을 다르게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²⁸⁾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적 성별정정 결정과는 별개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전역처분취소 판결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법적 성별정정, 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관계,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법적 성별이 성별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성별을 법적 성별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법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형성되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별변경에 관한 법률과 차별금지법을 둔 외국에서도 두 법에 따른 성별 판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영국의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은 정신과 진단을 받고 2년 이상 전환하고자 하는 성별로 산 경우에 성별인정증명서(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 GRC)를 발급하는데, 해당 법률은 GRC의 효력은 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나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성전환(gender reassignment)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는 GRC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평등법에 따른 차별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GRC 유무가 아니라 당사자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등대우를 받았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²⁹⁾

마찬가지로 설령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등대우가 있고 이것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그 사안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그 처분 등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전역처분취소판결, 대법원 2009도3580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19구합89043 판결 모두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판결들은 모두 당사자가 성확정수술을 받아 대법원 판례와 예

27) 이에 대해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7조 제2항은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2021. 2. 21. 개정(예규 550호)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실무적인 해석은 변함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윤진수, “성별정정 허가가 있기 전에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제23권 3호 (2009), 255-256

29) Alex Sharp, “Will Gender Self-Declaration Undermine Women’s Rights and Lead to an Increase in Harms?”, *Modern Law Review*, Vol. 83, No. 23 (2020), 539-557.

규에 따르더라도 성별정정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변희수 하사와 같이 처분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개별 사안에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이 반드시 민법의 그것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면 그 판단 기준 역시도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과 일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혼인 중인 경우 등 성별정정 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 사안에서는 성별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관리방안이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 수용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군대 내 트랜스젠더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이 사건 재판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이 된 것이 소송수계 인정 여부이다. 안타깝게 재판 시작 전에 변희수 하사가 망인이 된 상황에서 유가족이 이를 수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역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급여청구권은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변희수 하사 외에도 군 내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있고 그렇기에 성확정수술을 받고 전역처분을 받는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소송수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변희수 하사 외에도 군 내에 트랜스젠더들이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군대 내에는 다수의 트랜스젠더들이 존재한다. 앞서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정성별 남성인 트랜스젠더 259명 중 42.1%(109명)이 병(4급 보충역 포함)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응답하였다.³⁰⁾ 부사관 이상의 직업 군인의 경우에도 커밍아웃 후 원치 않게 전역을 해야 했던 공군장교의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³¹⁾ 그럼에도 이렇게 엄연히 군에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군 내에는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2010년대 병역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을 당시 병무청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역병 판정을 내렸으나 막상 훈련소에 입소한 후에는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귀가조치를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곤 했다. 따라서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에 있어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트랜스젠더가 의무복무를 요구받는 것과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30) 홍성수 책임, 앞 보고서, 222.

31) “성전환 제대군인의 호소…“또 다른 ‘변희수’가 나오기 전에””, KBS (2021. 3. 25.)

것이다. 의무복무의 경우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기에 지정성별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경우 복무를 하는 상황 자체가 차별과 인권침해, 나아가 성별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문제가 되곤 한다. 이에 비해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는 변희수 하사와 같이 복무를 원함에도 군이 거부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얼핏 보면 병으로서의 복무를 원치 않는 트랜스젠더와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가령 현재 의무복무 대상인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것이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³²⁾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서로 상반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이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생활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고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진단명을 신설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1판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항이다.³³⁾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역시 이러한 논의를 일부 반영하여 심신장애 판정기준 중 ‘성별불일치’로 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이 의무복무가 어려운 이유는 심신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남자 병사를 위해 설계된 군 체계 하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안전하고 자신답게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비해 직업군인의 경우는 지정성별 여성이 복무를 할 수 있기에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고 따라서 그 복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차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별불일치를 지금과 같이 심신장애 정신과 항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복무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 트랜스젠더와 군복무와 관련되어 얼핏 상반되는 사안처럼 보이는 것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존중받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맞게 사회적인 환경을 갖추고 제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번의 전역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32) 실제로 전역처분취소 사건에서 육군은 계속해서 변희수 하사의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33) WHO Europe, “WHO/Europe brief - transgender health in the context of ICD-11”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determinants/gender/gender-definitions/who-europe-brief-transgender-health-in-the-context-of-icd-11> (2021. 11. 30. 확인).

5. 마치며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변희수 하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 말은 올해 초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서울 광장에서 시민들이 추모행동을 했을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다. 변희수 하사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1주기가 다가온 지금 다시 한 번 변희수 하사가 용기를 내어 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랐던 한 명의 군인으로서 만들어낸 용기있는 변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역처분취소판결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논의와 트랜스젠더가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토론

토론1.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토론2.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3. 이은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토론4.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토론5.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故 변희수 하사 1주기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트랜스젠더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우인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I. 들어가며

박한희 변호사님과 김보라미 변호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트랜스젠더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에 관하여, 발표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에 관하여 생각을 할 때면, 개인적으로 늘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로, 영문제목은, 얼마전 미국에서 실사영화로도 제작되었던 ‘Ghost in the Shell’입니다. 내용은 정신이 기계화된 신체 속으로 들어가 평균적인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신체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화된 우월한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도구, 즉 껍데기(Shell)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신체를 지배하는 정신(Ghost)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트랜스젠더에 관하여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 즉 우리 개개인의 본질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신체가 아니라, 사고하고 결단을 내리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언젠가는 대체가능해질 수 있는 대체물, 즉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외부로 드러나 있는 신체, 특히 성징을 통해 발달된 외부 성기 등은 매우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¹⁾.

이러한 전제에 서면, 정신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심리적성결정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정신이 규정하는 성 정체성으로 gender를 결정하면 될 뿐, 굳이 이에 더하여 그러한 gender에 부합하는 신체로 바꾸어야만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공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정신과 신체의 괴리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성별정정 등 성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판례, 법제의 동향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신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II. 국내 판례의 동향²⁾

1. 성별 결정의 기준

성별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대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최초의 사건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었던 시절³⁾에 이루어진, 피해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이 남성이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30세 남짓 되었을 무렵 성전환 수술을 하여 외형상으로도 여성으로서의 신체를 가지게 되었던 트랜스젠더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안면부타박상을 입혀, 주위적으로는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예비적으로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은 “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성염색체의 구성’을 들었고,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즉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당해 사안에서는 육체적인 측면 중에서도 성염색체를 가장 중시하여 성별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로부터 10여년 후, 유사한 사안⁴⁾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여성으

2) 우인성·이은실, “성별정정에 관하여 -성전환자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71집, 사법발전재단(2020), 45~92 참조

3)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된,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4) 굳이 두 사안의 차이를 들자면, 범행 당시 96도791 판결의 피해자는 성전환수술을 한 지 4년가량 되었었고, 2009도3580 판결의 피해자는 성전환수술을 한 지 30년가량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성전환수술 자체는 이미 성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환수술을 한 지 얼마나 지났는가에 따라 사안의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중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성별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위 96도791 판결과 마찬가지로 종합적 고려설 내지 사회통념설의 입장에서 서 있으나, 기존의 판시 내용과는 달리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표현(wording)은 없다. 이는 종합적 고려설 내지 사회통념설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별 결정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성별정정의 근거 법률

실제 성별정정 사건에서, 어떤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사안에서 다루어졌다.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남성인 사람이 외부 신체상으로도 남성으로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안이었다. 당시 시행되던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0조(違法된 戶籍記載의 訂正)는 “戶籍의 기재가 法律上 許容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錯誤나 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그 戶籍이 있는 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戶籍의 訂正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⁵⁾, 1심과 2심은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혹은 그 기재에 착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트랜스젠더임이 명백한 경우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여성’인데 ‘남성’으로, 혹은 그 역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구 호적법 제120조의 내용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⁶⁾에서 같게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성별정정의 근거 규정에 관하여 법률의 흠결을 법해석으로 보충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듯, “성전환자에 대하여 출생 당시에는 달리 정신적·사회적

5) 구 호적법상 개명에 관하여는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성별정정의 경우 구 호적법상 명확하게 이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었다.

6)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 결정 요소를 확인할 수 없어 생물학적 요소만에 의하여 출생시 신고된 성이 그의 성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장한 후 일정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은 출생시 신고된 성과 반대의 성인 것으로 사후에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하여는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차후 성 정체성이 판별될 수 있는 무렵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성별정정의 제한

트랜스젠더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성별정정은 불가능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이를 소극적 요건으로 보았다⁷⁾. 즉 혼인 중에 있을 경우에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법제상 성별정정을 통해 동성혼의 외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정신적 충격 내지 혼란) 때문에 성별정정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법제상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헌법 규정에 이성혼을 전제로 하는 듯한 규정⁸⁾이 있으나, 그것만을 이유로 동성혼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혼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헌법 규정은 단지 그러한 형태 중 대중적인 형태의 결혼으로써 이성혼을 전제한 것일 뿐, 다른 형태의 결혼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반대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실제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서 자녀와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하여 자녀가 이해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모가 감수해야 하는 행복추구의 박탈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자의 복리 증진에 유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혼인 중이라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성별정정의 소극적 제한 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닐 것으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차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유럽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11., 38

8)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4.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별정정의 근거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인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0. 2. 21. 개정되기 전의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⁹⁾.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이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이 필요 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호파1406 결정은 성별정정을 위하여 외부성기의 제거 및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보았다. 외국 사례에서도 보겠지만, 성별정정을 위하여 외부적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육체의 완전성이나 가족을 구성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성별정정을 위하여 성전환 수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부모의 동의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인천가정법원 2019. 7. 1.자 2019브6 결정에서도 같게 해석하였다.

6. 소결

이상으로 국내에서 성별 결정의 기준 및 성별정정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성별정정에 관하여 판례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 성별정정 자체에 관하여는 향후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성별정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보듯,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일 것이다.

9) 제3조 (첨부서류) ①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성전환수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3조 (참고서면) ① 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III. 국외 판례 및 법제의 동향

1. 미국

가. 민권법 제7장

1960년대 시민운동의 결과 입법된 1964년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4)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EC. 2000(e)-2 [section 703]¹¹⁾

1) 고용주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행위가 된다.

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sex)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그 개인을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거나 또는 고용상의 보상, 계약조건, 권리 관련하여 그 개인을 차별하는 것.

나)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그 개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경향이 있는 방식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 또는 고용 지원자를 제한하거나, 분리하거나, 또는 분류하는 것.

위 규정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어서 많은 판례 법리가 발전되었다¹²⁾. 최근 동성애, 트랜스젠더 관련하여 *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판결¹³⁾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3개의 사건(*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Altitude Express, Inc. v. Zarda*; *R.G. & G.R. Harris Funeral Homes Inc.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 병합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stock*은 그가 gay softball league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Clayton County에서 해고되었고, 이에 *Bostock*이 Clayton County를 상대로 민권법 제7장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Zarda*는 그가 gay임을 밝힌 며칠 뒤에 *Altitude Express*에

11) 42 U.S. Code § 2000e-2 UNLAWFUL EMPLOYMENT PRACTICES

(a) Employer practices

It shall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n employer -

(1) to fail or refuse to hire or to discharge any individual, or otherwise to discriminate against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his compensation, terms, conditions, or privileges of employment, because of such individual's race, color,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or

(2) to limit, segregate, or classify his employees or applicants for employment in any way which would deprive or tend to deprive any individual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r otherwise adversely affect his status as an employee, because of such individual's race, color,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2/2000e-2> 2022. 2. 4. 방문

12) 박가현, “미국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판례 법리 등 연구”, 재판자료 제135집, 법원도서관(2017), 98 이하 참조

13) 590 US ___ (2020. 6. 15.)

서 해고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Aimee Stephens는 남성으로서 Harris Funeral Homes에 취업한 후 2013. 7. 31.경 고용주에게 자신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서 근무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고용주가 Aimee를 해고하였고, Aimee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고용기회평등위원회, ‘EEOC’로 약칭)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진정하였다. 사건을 조사한 EEOC는 민권법 제7장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Harris Funeral Home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¹⁴⁾. 위 사건들의 쟁점은 민권법 제7장의 ‘성(sex)’에 ‘sexual orientation’과 ‘gender identity’가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다수의견은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textualism의 입장에 서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포섭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만약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두명의 근로자가 한명은 여성이고 한명은 남성인데 고용주가 이를 이유로 남성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혹은 근로자가 출생 시에는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의 성(sex)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성(sex)에 기반하여 차별하는 것이 된다¹⁵⁾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sex만이 법규정에 있을 뿐,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는 법규정에 없고, 국회에서 이러한 법문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영역을 법원이 월권하여 강탈(usurp)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았다¹⁶⁾.

이 판결의 의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민권법에 의하여 금지됨을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¹⁷⁾, 향후 관련 문제(화장실, 라커룸 이용 등)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는 더 두고볼 일이다¹⁸⁾.

14)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7-1618_hfci.pdf 및 <https://www.leagle.com/decision/infco20180307120> 각 2022. 2. 3. 방문

15) "...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 status are inextricably bound up with sex. Not because homosexuality or transgender status are related to sex in some vague sense or because discrimination on these bases has some disparate impact on one sex or another, but because to discriminate on these grounds requires an employer to intentionally treat individual employees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sex." 위 [17-1618_hfci.pd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7-1618_hfci.pdf), Opinion of the Court p.9~10; 140 S.Ct. 1742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_case?case=13821597088002244842&hl=en&as_scl=6&as_vis=1&oi=scholar 2022. 2. 3. 방문

16) 위 [17-1618_hfci.pd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7-1618_hfci.pdf), Alito, J., dissenting p.2~3 및 Kavanaugh, J., dissenting p.2; 140 S.Ct. 1755, 1823

17) 보다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 화장실, 라커룸, 드레스 코드 등에 관한 문제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 under Title VII itself, they say sex-segregated bathrooms, locker rooms, and dress codes will prove unsustainable after our decision today. But none of these other laws are before us ..." 위 [17-1618_hfci.pd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7-1618_hfci.pdf), Opinion of the Court p.31

18)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employers-understanding-supreme-court-s-title-vii-ruling> 2022. 2. 4. 방문; 미용사 학원의 수강생 중 MTF 여성이 그 학원의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의 조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2021. 6. 15. 선고 2019구합89043 판결(확정)이 있었다. 당사자인 MTF 여성은 학원장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성 정체성을 이유로 5개월간 화장실 사용이 제한됨)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700만 원 상당이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함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소12475 판결(확정)].

나.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하여, 미국에서 군대가 만들어진 이후 1960.경까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가, 196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금지되었다.

금지되던 시절에 이루어진 몇 개의 판결을 본다. 1981.경 Doe v. Alexander 사건에서, 트랜스젠더를 군복무에서 배제시키는 군 규정¹⁹⁾에 따라 군복무에서 배제된 트랜스젠더가 육군부장관(Secretary of the arm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²⁰⁾. 1987.경 Leyland v. Orr 사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경우 육체적으로 군복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군복무 배제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다²¹⁾.

그러다가 Obama 정부 시절인 2016. 6. 30. 이러한 제한을 없었는데²²⁾, Trump 정부 시절 트랜스젠더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용 등을 이유로 2019. 4. 12.경부터 트랜스젠더의 신규 군복무를 금지시켰다(이미 근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²³⁾. Biden 정부에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2021. 1. 25. Trump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시키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²⁴⁾.

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험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공무원 의료보험인 FEHB(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의 적용을 받는데, FEHB에 가입된 공무원은, 주마다 세부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수술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²⁵⁾.

19) Army Regulation 40-501, § 2-14(s) which provides, inter alia, that "major abnormalities and defects of the genitalia such as change of sex ..." constitutes a disqualifying medical defect.

20) 510 F. Supp. 900 (D. Minn. 1981)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510/900/1980624/> 2022. 2. 4. 방문

21) <https://casetext.com/case/leyland-v-orr> 2022. 2. 4. 방문

22) https://en.wikipedia.org/wiki/Transgender_personnel_in_the_United_States_military 2022. 2. 4. 방문

23) 이에 대하여 그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injunction)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관하여 Cindy K. Suh, "Reviewing a Ban on Transgender Troop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ou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1, 2019, 158 이하 참조 <https://www.swlaw.edu/sites/default/files/2019-04/9.%20Cindy%20K.%20Suh%2C%20Reviewing%20a%20Ban%20on%20Transgender%20Troops%20from%20an%20International%20Perspective.pdf> 2022. 2. 6. 방문

24)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5799913> 2021. 1. 25.자 BBC NEWS: <https://transequality.org/the-discrimination-administration>: <https://www.vox.com/identities/2017/7/26/16034366/trump-transgender-military-ban> 각 2022. 2. 3. 방문

25)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11., 95

2. 유럽

가. 유럽인권재판소

(1)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판결

2017. 4. 6. 유럽인권재판소의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판결²⁶⁾ 다수의견은, 프랑스 법률이 출생 증명서의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하여 ‘외관에 있어서의 변경이 불가역적일 것(the change in their appearance was irreversible)’을 요구하는 것은, 불임수술이나 생식불능의 개연성이 높은 처치(treatment)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석되고²⁷⁾, 이는 유럽인권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8조²⁸⁾가 보장하는 개인적인 삶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for their private life)를 행사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3조²⁹⁾가 보장하는 육체적 온전성을 존중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for their physical integrity)를 포기하여야만 하는 결과가 된다고³⁰⁾ 하면서³¹⁾, 프랑스는 개인적인 삶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³²⁾.

(2) Sabalić v. Croatia 판결

2021. 1. 14. 유럽인권재판소는 Sabalić v. Croatia 판결³³⁾에서, 2010. 1.경 나이트클럽에서 Sabalić은 자신에게 수작을 거는(flirting) 남성에게 ‘나는 레즈비언이라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 그 남성이 Sabalić을 폭행하였는데, 크로아티아 경찰은, 이를 hate crime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 기소를 하도록 하지 않고, 경범죄로 벌금 40유로에 처하였는바, 이러한 동성애 증오 범죄³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를 하지 아

26) [https://hudoc.echr.coe.int/spa#{%22itemid%22:\[%22001-172913%22\]}](https://hudoc.echr.coe.int/spa#{%22itemid%22:[%22001-172913%22]}) (대상판결) 2022. 2. 3. 방문

27) 위 판결 para 120.

28)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2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30) 위 판결 para 131.

31) 위 판결 사안이 문제된 이후, 프랑스 법률은 2016. 10. 12. 명시적으로 불임 요건을 삭제하였다. 위 판결 para 134: “Transgender rights: France scraps sterilisation in status law”, 2016. 10. 14. BBC News article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7653459> 2022. 2. 4. 방문)

32) 위 판결 para 135.

33) [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207360%22\]}](https://hudoc.echr.coe.int/eng#{%22itemid%22:[%22001-207360%22]}) (대상판결) 및 <https://ilga-europe.org/resources/news/latest-news/european-court-human-rights-finds-croatian-response-violent-homophobic> 2022. 2. 3. 방문

니하고 경범죄로 처벌하여 그 사건이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다시 처벌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성적 지향 증오에 기반하여 Sabalić을 폭행한 범죄에 관하여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이유로³⁵⁾ 크로아티아 당국이 Sabalić에게 1만 유로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³⁶⁾. 이 사건은 동성애자에 관한 사건이지만, hate crime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gender identity를 이유로 한 범죄, 곧 트랜스젠더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³⁷⁾, 위 판결은 Anti-LGBT hate crime에 관하여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크로아티아에서 2020. 현재 경찰이 입건한 증오범죄는 87건이었고, 이 중 Anti-LGBT hate crime은 8건이었다³⁸⁾.

나. 영국

영국은 2004. Gender Recognition Act(젠더승인법)를 제정하여, 18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gender에 대하여 법적 공인을 받을 수 있다. sexual orientation이나 transgender identity에 대한 혐오 범죄는 형 선고에 있어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³⁹⁾.

아울러 2010. Equality Act(평등법. ‘EA10’ 으로 약칭)를 제정하여, 연령, 장애, 성전환(Gender reassignment), 혼인 또는 동성결혼, 인종(피부색, 국적,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차별사유(보호대상)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남성, 여성에 대하여 값을 다르게 매길 경우 EA10 위반이 될 수 있다⁴¹⁾. 자신을 non-binary(genderfluid)라고 밝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그로 인하여 차별적인 언사(‘it’ 이라는 호칭)나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의 처우 불개선 등을 받게 될 경우 EA10 위반이 될 수 있다⁴²⁾.

34) “Hate crime is any criminal offence under this Code, committed as a result of hatred towards a person because of his or her ... sexual orientation ...” 위 판결 para 32.

35) 비인간적이고 존엄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제3조, 차별을 금지하는 제14조를 침해하였다. 위 판결 para 60., 71., 115~116.

36) 위 판결 para 120. 이하

37) <https://www.legislationline.org/topics/country/37/topic/4/subtopic/79> 및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21394> 2022. 2. 3. 방문

38) <https://hatecrime.osce.org/croatia> 2022. 2. 3. 방문. 2019년에는 48건 중 6건, 2017년에는 25건 중 7건이었다.

39) Catherine Fairbairn, Manjit Gheera, Doug Pyper, Philip Loft, ‘Gender recognition and the rights of transgender people’, House of Commons Library(Number 08969, 22 July 2020), 8~9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8969/CBP-8969.pdf>) 2022. 2. 4. 방문

40) Section 4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protected characteristics—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pregnancy and maternity;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Section 7 (Gender reassignment) “(1) A person has the protected characteristic of gender reassignment if the person is proposing to undergo, is undergoing or has undergone a process (or part of a process) for the purpose of reassigning the person’s sex by changing physiological or other attributes of sex.”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part/2/chapter/1> 2022. 2. 4. 방문

41) Bower v Brewdog Plc [2019] EW Misc 16 (CC) [같은 맥주를 여성에 대하여는 4파운드, 남성에 대하여는 5파운드에 판매하는 행위는 평등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소액(small claims) 사례]

<https://www.casemine.com/judgement/uk/5d133cf52c94e0558cd6842d> 2022. 2. 4. 방문

42) Ms R Taylor v Jaguar Land Rover Ltd: 1304471/2018 [근로자가 회사를 노동법원(Employment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의료지원도 제공되고 있다⁴³⁾.

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 성전환에 있어 불임요건(fortpflanzungsunfähig; sterilization requirement)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및 재생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1, 2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도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⁴⁵⁾, 2017. BGH(연방일법원)는 성전환 이후 자녀를 출산한 FTM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적 의미에서 모(im Rechtssinne Mutter des Kindes)라고 판단하였다⁴⁶⁾. BGH의 이러한 판단은 독일민법 규정의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만⁴⁷⁾, 차후 재고될 것으로 생각한다⁴⁸⁾.

독일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허용된다⁴⁹⁾.

3. 일본

일본의 경우 성별정정을 위하여 불임수술을 하여야 하는바, 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⁵⁰⁾.

-
- Tribunal)에 제소하였고, 회사는 genderfluid(non-binary)는 'gender reassign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법원은 포함된다고 보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c8d559d3bf7f7f5c134ad3/Ms_R_Taylor_v_Jaguar_Land_Rover_Limited_-_1304471.2018_-_Reasons.pdf 판결문(para. 43-6, 168, 178 참조); <https://www.forbes.com/sites/jamiewareham/2020/09/16/non-binary-people-protected-by-equality-act-in-lanmark-ruling-against-jaguar-land-rover/?sh=1f792db579be> Forbes News article (각 2022. 2. 4. 방문)
- 43)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11., 123
- 44) Beschluss vom 11. Januar 2011 - 1 BvR 3295/07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11/01/rs20110111_1bvr329507.html) 2022. 2. 4. 방문)
- 45) A.H. and others against Germany(Application no. 7246/20), Written Comments(11 Nov 2020), 6 https://ilga-europe.org/sites/default/files/AH%20v.%20Germany%20draft%20TPI%20_FINAL.pdf 2022. 2. 4. 방문
- 46) XII ZB 660/14 vom 06.09.2017 [Personenstandssache: Eintragung eines Frau-zu-Mann Transsexuellen als Mutter des nach Änderung seines personenstandsrechtlichen Geschlechts geborenen Kindes] <https://rewis.io/urteile/urteil/gtz-06-09-2017-xii-zb-66014/> 2022. 2. 4. 방문; 프랑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되었다. <https://www.france24.com/en/20200916-french-court-rules-transgender-woman-cannot-be-recognised-as-child-s-mother> 2022. 2. 4. 방문
- 47) "Mutter eines Kindes ist nach § 1591 BGB die Frau, die es geboren hat."
- 48) 독일 내에서도 학계 및 다수 단체에서 BGH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A.H. and others against Germany(Application no. 7246/20), Written Comments(11 Nov 2020), 8(fn. 35~7); 미국인 Thomas Beatie의 경우, FTM으로 성전환 이후 아이를 낳았고 Guinness Records에 아이를 낳은 최초의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다. https://www.guinnessworldrecords.com/world-records/first-married-man-to-give-birth?fb_comment_id=970743489607836_1597668960248616 2022. 2. 4. 방문
- 49) <https://www.dw.com/en/meet-anastasia-germanys-first-transgender-army-commander/a-51350096> 2022. 2. 6. 방문
- 50) <https://thediplomat.com/2019/02/japans-supreme-court-upholds-surgery-as-necessary-step-for-official-gender-change/> 2022. 2. 6. 방문

일본 후생노동성은 성소수자의 고용기회 평등을 위하여 ‘공정한 채용을 목표로(公正な採用選考をめざして)’ 라는 지침을 발간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LGBT라는 이유로 기피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 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 존중하여,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性自認) 등에 관계 없이, 능력과 적성에 기초한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유의하라고 하고 있다⁵¹⁾.

4.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군복무 허용 국가들

네덜란드는 1974.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최초로 허용한 국가이며, 그 후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등이 이를 따랐는데, 2017. 현재 총 19개국에서⁵²⁾, 2021. 1. 현재 총 21개국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군복무를 할 수 있다⁵³⁾.

IV. 마치며

얼마전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동물의 세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양화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세대를 거듭할수록 개체는 더 다양한 유전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다양성의 인정이 공존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학에 대한 지식이 짧은 필자이지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범주 내에 있는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다양한 개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체들의 다양성을, 기존 지식의 틀 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 내지 지식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 보다 다양한 사람과 생명, 사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틀 안에서만 본다면 ‘다양성’ 내지 ‘다름’ 은 ‘틀림’ 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 ‘다양성’ 이 우리의 인지범위의 틀 내로 포섭되게 된다면, ‘다름’ 은 ‘틀림’ 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옳음’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51) 厚生労働性, “公正な採用選考をめざして”, 2021(令和3年), 45

52) Cindy K. Suh, “Reviewing a Ban on Transgender Troop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ou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1, 2019, 156; <https://www.latimes.com/nation/la-na-transgender-military-20160707-snap-story.html> 2022. 2. 6. 방문

53) “As of January 2021, 21 countries allow transgender military personnel to serve openly: Australia, Austria, Belgium, Bolivia, Brazil, Canada, Chile, Czech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Ireland, Israel,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https://en.wikipedia.org/wiki/Transgender_people_and_military_service#:~:text=As%20of%20January%202021%2C%20Sweden%2C%20and%20the%20United%20Kingdom. 2022. 2. 6. 방문

발제하신 변호사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박한희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 먼저, 발표문 8-9쪽에 있는 성별정정의 장래효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성별정정의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인바, 그 내용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등록부의 기록이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그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전제에 선다면, 트랜스젠더의 성별은 이미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따라서 ‘성별정정’ 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성별확정(내지 성별확인)’ 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성별정정’ 절차는 그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새로이 형성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변호사님께서 ‘성전환수술’ 이라는 용어 대신 ‘성확정수술’ 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시는 듯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정정’ 을 통한 성별의 변경은 장래효가 아니라 소급효를 갖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기왕의 법률관계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혼란은, 기왕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에 따른 법률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방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박변호사님께서 성별정정이 장래효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소급효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나. 다음으로, 발표문 1쪽에 있는 심신장애사유인 ‘음경/고환상실’ 관련한 내용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320.은 ‘음경상실’ 을, 321.은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를, 326.은 ‘고환결손’ 을 심신장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신장애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음경/고환상실’ 을 심신장애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사고로 ‘음경/고환상실’ 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 정체성은 남성이지만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genderfluid이지만, 남성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심신장애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역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위와 같은 신체상태를 갖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데 관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김보라미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 먼저, 발제문 10쪽의 Bostock 판결 관련한 내용입니다. Bostock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권법 제7장의 ‘sex’의 개념에 ‘sexual orientation’이나 ‘gender identity’를 포섭시킬 수 있는지 여부, 즉 법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행정판결에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남성임을 전제로 심신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이지만, 재판부로서는 ‘여성이므로 피고 주장 사유는 원고측에 적용할 수 있는 심신장애사유가 아니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더 나아가, 성 정체성에 기인한 차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김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나. 다음으로, 박한희 변호사님께 드린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음경/고환상실’을 심신장애사유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없으신지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트랜스젠더 인식 개선과 법적/제도화 과제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변희수 하사 사건은 군대의 문제이면서 그 이상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함

- 한편으로, 이 사건은 군대 내의 인권 문제이자, 군대 밖 사회 발전에 비해 뒤쳐진 군대의 보수성이 문제의 원인 (cf. 군인 인권, 군내 성평등, 군대 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문제)

- 다른 한편, 군대 역시 사회의 일부이고, 국방부 역시 정부의 한 부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의 후진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 만약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수준이 높은 수준이었다면 군 역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임. (cf. 군대 말고도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가시화’ 되어 있거나 정책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트랜스젠더 인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보유한 조직이 있나?)

■ 결국 한편으로는 군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 사회 전체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수준의 향상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된 적이 없으며, 불필요한 성별 분리로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특별히 가중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인구주택총조사, 교육, 노동, 보건의료, 가족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하여 체계적인 통계 수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가 특별히 불거지는 영역은 성별을 분리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예: 화장실, 군대, 경찰, 여대, 주민번호 등 공문서상 성별 표기, 교도소, 기숙사, 목욕탕, 탈의실 등) 이 중 정말 성별 분리가 불가피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cf. 경찰 채용에서 남녀 통합 모집 정책 실시)

■ 군대 내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 실태¹⁾

-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관련 어려움: 공동샤워시설 이용 58.3%, 성소수자 비하 발언 및 문화 54.6%,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52.8%, 공동 취침시설 생활 44.4%, 성희롱/성폭력 두려움 34.3%
 - 트랜스젠더 관련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경험: 관심사병 분류 29.5%, 성희롱 또는 성폭력 12.4%, 비전 캠프 등 부적응 기관 이송 12.4%, 업무에서 차별 9.5%, 원치 않는 검진 및 입원 요구 4.8%, 강제 전역 요구 4.8%, 기타 폭력이나 부당 대우 5.7%
 -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 참거나 묵인 86.7%, 가해자에게 항의 대응 4.4%, 민원 제기 6.7%
 - 기관 내 보고 및 도움 요청 15.6%, 인권위 등에 민원 제기 4.4%, 시민단체 도움 요청 2.2%, 경찰 신고, 소송 2.2%
 - 대응하지 않은 이유: 심각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 18%, 신고 방법 모름 28.2%,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거 같아서 61.5%, 신고 시 피해 우려 69.2%, 트랜스젠더임이 밝혀지기 때문 59.0%
- 트랜스젠더 당사자 591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결과, 군대 뿐만 아니라, 법, 제도, 의료, 교육, 노동, 시설 및 재화/용역, 국가기관, 가족 등 사회 전영역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 I. 가시화와 인식 개선: 정책집단으로서의 트랜스젠더 가시화, 미디어를 통한 트랜스젠더 인식 개선, 트랜스젠더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사회적 캠페인
- II. 차별금지법 등 입법적 개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 III. 성별표기: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등 식별번호 체계 개편, 신분증 등 공문서상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 성별정보 수집 최소화

1) 군복무자 경험자 대상 조사 (현역 포함)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연구책임자 홍성수, 공동연구자: 강민형, 김승섭, 박한희, 이승현, 이해민, 이호림, 전수운)

IV. 성별 정정: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별 정정 절차 개선 및 법제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문서 정비 및 관리, 성별정보에 대한 제3의 선택지 제공

V. 의료영역: 기본방향, 비병리화와 정신건강, 성전환 관련 의료, 일반 의료, 의료정보, 의료보험 등 지원, 의료기관의 차별 방지

VI. 교육영역: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의제를 포함하는 교과 과정, 트랜스젠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학교 내 괴롭힘 방지

VII. 노동영역: 고용 기회의 평등, 직장 내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트랜지션 지원 관련 사내 복지

VIII. 시설 및 재화, 용역: 화장실 등 성별분리시설, 성중립적 시설의 확대, 광장 등 공공 시설, 부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및 재화, 용역

IX. 국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정책: 군대, 행정, 형사사법, 공무원 교육

X. 가족: 가족 내 혐오차별 방지, 가족구성권 보장

■ **군대 내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트랜스젠더 병리화 요건 삭제
- 트랜스젠더 병사 복무 지침 마련 및 군 관계자 교육
- 군대 내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구제 방안 마련(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 트랜스젠더 친화적 공간으로서 군대 시설 개편 및 다양성 문화 확립

■ **여론과 인식 개선**

- 여론조사 (갤럽, 2020): 트랜스젠더 군복무 해도 된다 33%, 해서는 안된다 58%, (동성애자 취업에는 긍정 - 90% 동의, 01년 69%에 비해 꾸준히 상향)
- 여론조사(18-20세, 오마이뉴스, 2020): 트랜스젠더 군복무 찬성 53.3%, 반대 46.7%, 여성 응답자 찬성이 다소 높음(61.3%). 동성혼 인정 찬성(67.2%)에 비해서 낮고, 여대 입학 찬성(44.2%)에 비해서는 높음

- 미국 여론조사 (퀴니피악대학, 2017): 트랜스젠더 군복무 문제 없다 68%

- KBS, MBC, SBS, JTBC 등 방송사, 진보언론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매우 많았고 이는 긍정적임.

→ 단순 여론조사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접촉 경험이 많은 젊은 층일수록 긍정적인 인식. 따라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 접촉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법/제도의 변화가 제약되어서는 안됨. (cf. 군대에서 유난히 거부감이 큰 이유는?)

→ 법적/제도적 변화와 인식 개선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선후 문제로 보면 안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주유선, 2019)

- 성소수자의 경우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에 따른 편견 감소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집단: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우리 동네에서 성소수자를 직접 접촉한 사람일수록 명시적 편견이 적음.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이나 웹툰, 가족친구, 지인의 말을 통해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명시적 편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접촉’ 이 무조건 편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임. 따라서 양질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사회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성소수자와의 양질의 접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은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2021.11.19 한겨레 신문 기사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던 변희수 하사.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뒤 힘을 내 싸워보겠다고 했던 변희수 하사는 2021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고’ 변희수 ‘전’ 하사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강제전역 취소는 행정소송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그녀를 ‘고’ 변희수 하사라고 부를 수 있다. 고 변희수 하사에 앞서 2월엔 2명의 트랜스젠더가 숨졌다. 성소수자 활동가, 트랜스젠더 김기홍씨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의 대본을 쓴, 생전 자신을 ‘생존하는 트랜스젠더 작가’ 라 일컬었던 고 이은용 작가도 같은 달 숨졌다.

2021.3.6 서울신문 기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자살이라기 보다는 성소수자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는 사회적 타살” 이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자살

2015년 Veale등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1년에 3명중 1 명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2014년 Irwin등에 의하면 다른 성소수자(LGB)와 비교하여도 트랜스젠더의 자살 충동이나 자살시도가 2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성확정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2000명중 16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이는 10만명당 800명의 비율로, 미국 내 일반인구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0만명당 11.5명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Pfafflin & Junge, 1998).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기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서 19-25%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Dixen, Maddever, van Maasdam, & Edwards, 1984),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하는 사람들의 1/3에서 일생에 한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한다(Clements-Nolle, Noelle, Guzman, et al., 2001; Clements-Nolle, Marx, & Katz, 2006; Grossman & D’Augelli, 2008; Kenagy, 2005;

Whittle et al., 2007; Xavier, Honnold, & Bradford, 2007). 트랜스젠더의 자살시도는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Xavier et al., 2007). 2015년 Reisner 등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시스젠더 청소년에 비해 자살에 대한 생각이 3.6배, 자살시도는 3.2배 높으며, 자해 4.3배, 우울증 3.9배, 불안장애 3.2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트랜스젠더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이유를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트랜스젠더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법 및 사회정책과 같은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
2.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및 성적 학대로 표현되는 트랜스혐오의 경험
3.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함.
4. 트랜지션과 관련한 스트레스 (트랜지션을 하면서 겪게 되는 주변의 강한 반발, 생활의 파괴, 트랜지션을 함으로써 겪을 위험 및 트랜지션을 하는데 걸리는 장기간의 시간 등에 대한 위험부담 등)
5. 성별불쾌감, 즉 자신의 신체구조에 의하여 지정 받은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정체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Bailey et al., 2014; Haas et al., 2011; Suicide Prevention Resource Center [SPRC], 2008; Taylor et al., 201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21년 인구 10만명당 23.5명의 자살률을 보여 OECD 국가 평균 10.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그 중 트랜스젠더의 자살률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 보고된 바도 없어, 우리나라에서의 트랜스젠더의 자살 사망률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기술한 트랜스젠더의 자살 증가 요인들을 상기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트랜스젠더 혐오조사 발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트랜스남성 111명, 트랜스여성 189명, 논바이너리 여성 및 남성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0년에 발표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39.4%에서 언어 폭력을, 10.5%에서 신체 폭력을 경험했고, 56.6%는 가족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했다고 하였다. 22.3%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환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11.5%는 실제 전환치료 목적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바 있었다.

응답자의 67%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 중에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경험하였고, 21.3%는 교사로부터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언어, 신체 폭력 및 기타 부당

한 대우를 받은 바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변희수 하사 전역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94.8%는 혐오표현을 접하였고, 97.9%는 숙명여대 신입생 트랜스 여성의 입학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접하였으며 91.5%는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7%는 현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5%만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한해동안 57.1%가 우울증으로 진단 혹은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24.4%가 공황장애로 진단 혹은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LGBT)의 정신건강 이슈

성소수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도 소수자로서,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인다.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차별, 편견, 공정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상태, 의료 접근의 제한과 같은 사회적 차별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다. 성소수자가 유전적으로 건강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이론은 근거가 없으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이 소수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 인자는 외적인 스트레스 인자와 내적인 스트레스 인자로 구분될 수 있다. 외적인 스트레스 인자는 차별, 편견, 거부등과 같은 요인이며 이러한 외적인 스트레스요인은 내적인 스트레스로 전환되어 내적으로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등을 초래하여 스스로 간혀 지내게 되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불안, 각성 등을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외적인 스트레스와 내적인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적되면서 고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상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스젠더 이성애자와 달리 성소수자들은 매일 더 많은 차별에 직면하고, 이러한 차별을 체감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 건강 또한 나빠진다. 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을 통제할수록 성소수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를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편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자신 스스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내재화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자신의 자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면서, 만성적으로 우울, 불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억압하게 하기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절망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자해, 약물남용, 위험행동, 자살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2017년 중국에서 시행된 트랜스젠더 인구조사발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64.2%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고, 24.6%는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56.4%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13.1%가 자살시도를 했지만 정신보건전문가의 면담을 받은 경우는 27.8%에 불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18-30세 성인에서 자살생각은 12%, 자살시도는 3%인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접근

1.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인식의 변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인식은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0년 미국의 정신질환분류체계(DSM-III)에서 ‘아동의 성주체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와 성인의 트랜스섹슈얼리즘(transsexualism)으로 처음 지칭된 이후 1994년 DSM-IV에서는 기존의 진단명을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통합하였으며, 2013년 DSM-V에서는 성주체성장애를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으로 개정하였고, 이후 WHO의 질병분류시스템에서도 성주체성장애를 성별불일치감(gender incongruence)로 개정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 범주에서 삭제하고, ‘성건강범주’로 옮기게 되었다. WHO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하는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바, ICD-11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반영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도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2.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인구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0.6%, 청소년의 0.7%가 자신의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바 있다. (UCLA school of law, 2017). 인종별 빈도를 보면, African-American과 Latino 혹은 Hispanic 성인의 0.8%. 백인의 0.5%. 동양인을 포함한 기타 인종에서 0.6%의 빈도를 보였다. 2017년 Meerwijk 등에 의한 메타분석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을 약 0.39%라고 보고한 바 있다. 2015년 벨기에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0.7%, 여성의 0.6%가 성별불일치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조사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소수자 인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빈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3. 성별불쾌감(성별불일치감)에 대한 의학적 접근

성별불쾌감 치료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치료법의 가짓수, 치료법의 유형, 치료를 실시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Bockting, Knudson, & Goldberg, 2006; Bolin, 1994; Rachlin, 1999; Rachlin, Green, & Lombardi, 2008; Rachlin, Hansbury, & Pardo, 2010),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별표현 및 성역할 변화 (하루 종일 또는 특정한 때에만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역할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
- 호르몬 치료로 신체를 여성화/남성화하기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상응하는 신체변화 유도)
- 수술로 일차 내지 이차 성징 바꾸기 (유방/흉부, 외부 생식기, 내부 생식기, 얼굴 생김새, 신체 윤곽 등)
- 심리 치료 (개인, 커플, 가족, 또는 집단치료): 성별정체성 · 성역할 · 성별표현을 탐색하거나, 성별불쾌감과 사회적 낙인이 정신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거나, 내면화된 트랜스혐오를 완화하거나, 사회와 동료의 지지를 강화하거나, 신체상(身體像)을 좋게 하거나, 회복력(resilience)을 배양하고자 함.

내과(호르몬치료) 및 외과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문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고, 성별불쾌감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의 정신 기능(psychological function)은 시스젠더의 정신 기능과 다르지 않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정신 기능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성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수술, 특히 생식기 수술은 성별불쾌감 치료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이자 가장 숙고하여 진행하는 단계이다. 수술 없이도 자신의 성별정체성, 성역할, 성별표현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트랜스섹슈얼 · 트랜스젠더 · 성별비순응자도 많지만, 성별불쾌감을 완화하는 데 수술이 극히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많다(Hage & Karim, 2000).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성별정체성에 더욱 확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차 내지 이차 성징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성별불편감으로 계속 괴로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술은 환자가 성관계 상대를 대할 때나 진료실, 수영장, 헬스클럽 같은 장소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수술을 받음으로써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을 때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기도 한다.

후속연구에 따르면 성확정수술은 주관적 안녕, 미용, 성 기능 등의 성과에 명백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De Cuypere et al., 2005; Gijs & Brewaeys, 2007; Klein & Gorzalka, 2009; Pfafflin & Junge, 1998). 성확정수술은 트랜스젠더에서 정신적 컨디션을 향상시키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며, 약 80%는 수술 후 삶의 질이 향상된다(Murad et al, 2010). 2020년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Am J Psychiatry 2020:177:727-734)에 발표된 연구에서 트랜지션 수술 후 기분장애, 우울장애 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며, 특히 자살시도로 인하여 입원한 사례는 수술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는 없었다.

심리 치료는 성별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별 문제를 탐색하고 성별불쾌감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Bockting et al., 2006; Bockting & Coleman, 2007; Fraser, 2009a; Lev, 2004). 심리 치료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 삶의 질, 그리고 자존감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 치료는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성별비순응자가 (i)성별정체성과 성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탐색하고 (ii)정신건강과 인간발전에 사회적 낙인과 소수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며 (iii)커밍아웃 과정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Bockting & Coleman, 2007; Devor, 2004; Lev, 2004).

정신건강 전문가는 트랜스젠더 개인과 가족을 지지하고 대인관계 기술과 회복력을 키워 줌으로써, 이들이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성별비순응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심리 치료는 검사 및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동반 정신장애(불안, 우울증 등)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의 자해 및 자살을 줄이는 데 있어 가족 및 동료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밝혀졌다. 부모 및 가족이 트랜스젠더를 지지해주는 경우 부정적인 부모의 트랜스젠더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신체/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충분한 영양과 보호를 받게 된다(Travers 등 2012). 이에 반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부모의 트랜스젠더 자녀는 우울감,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시도가 2-10배까지도 증가하였다. 가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동료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로부터의 지지 또한 이들의 자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Kia 등 2021).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정신 질환이 아니며,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도 동일한 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조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더불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학적 조치가 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장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확정수술 비용에 관하여 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 이후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성소수자가 사회보장에 있어 겪는 차별을 제거할 것을 권유하고, 2018년 2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및 비자발적인 의료개입을 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는지, 과연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조치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며 성확정수술이 미용 수술로 분류되는 견해가 올바른 지에 관하여 고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황예원

| 국제 NGO 단체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NGO 단체에서 Equity, Diversity & Inclusion (공정, 다양성, 포용성) 팀 담당자 황예원 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뜻 깊고 중요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이야기를 공유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작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 김기홍님의 유서에 “너무 지쳤어요 이 삶도, 내가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 라는 말씀을 남겨 주셨는데 트랜스젠더인 저 자신에게 너무나 다가오는 말인 거 같습니다. 저는 1991년 올해 한국나이 32, 만으로 30 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 10년 전, 2012년에 호르몬, 외적 수술을 포함한 메디컬 트랜지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고 싶은건,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메디컬 트랜지션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거 그리고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전환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점, 수술 여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 주셨음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평생을 나 자신과 싸우고, 가족의 반대에 맞서 왔으며 사회에서 받는 끝없는 혐오와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던 외롭고도 외로운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14살때 한국을 떠나 해외생활을 하다 지난 2020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때 소위 ‘여성스럽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친구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정말 많은 놀림과 조롱을 받았기에 한국으로 돌아 온다는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고향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안타깝게도, 16년 후 돌아온 한국은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사회적 혐오, 손가락질, 또 그걸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인권 논의가 앞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아주 예전에 통과 시킨 차별금지법은 15년째 계류와 폐가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아직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저는 관공서를 갈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슬프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매일매일 우리를 좀 보아 달라,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사회적 동의’ 가 필요하다는 기약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한명의 트랜스젠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실 교수님이 말씀 해 주신 것 처럼 우리 트랜스젠더들은 이 Cis-gender(시스젠더) 중심 사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별과 외로움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트랜스젠더들의 Ally(동료)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동료가 된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나, 직장동료, 친구가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했을때, 내 일인냥 그들을 따끔하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혐오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 오랜 차별금지법 관련 논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소수자를 위해 항상 싸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조금 만 더 싸워 주세요. 그 어떤 세력이 방해하고 혐오해도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세요.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같이 그들의 혐오를 연대와 사랑으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삶이 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더 희망적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으로 살아남아 노동자로 인정받기
- 트랜스젠더 군인 변화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뒷장 발표자료

01 토론 순서

1. 여성으로 살아남기
2. (성소수자) 노동자로 인정받기
3. 98년생 변희수 : 생의 조건들
4. 우리의 과제

들어가며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태어날 때의 신체적 성별과는 반대인 자신의 진정한 성별로 살기를 원하는 성전환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들은 병역, 일자리, 의료보험, 주민등록증, 학교, 은행 등등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혐오로부터 시작된 차별과 억압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 노회찬*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2006)

'여성'이라는 갈래

지정성별 여성 = 생식기 중심의 외과적 판단

법적성별 여성 = 등록부정상상의 여성

패싱성별 여성 = '여성'으로 임혀지다

'여성'은 단일하지 않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질문: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필요할까?

“ (트랜스젠더) 여성 ” 이라는 표기
(트랜스젠더) 남성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적인 사회에서 홀로 싸우는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기

존재의 승인 = 권리의 승인

성소수자로 인정받기

동성애자가 배제되는 사회적 보장의 종류	예상 손실액
20년 근속할 경우 임금 중 가족수당 월 3만원	720만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20년간 수령할 경우 (물가상승률 3% 반영)	9,673만원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월 4만원 보험료를 낼 경우	960만원
경조사(혼인, 배우자부모 장례)로 인한 유급휴가를 총 15일로 상정한 경우	150만원
복지수당 30만원이 매년 배우자 몫으로 추가 지급되는 경우	600만원
총계	1억2천1백만원

*주: 평균 20년 근속한 노동자가 사망 후 그 배우자가 20년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론회
 〈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차별 현실과 성소수자-노동운동의 과제"
 발표자: 박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노동권팀장) (2014)

트랜스젠더의 경우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호르몬 요법 또는 성별재지정수술)를 받은 285명의 참여자 중 43.2%(123명)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다고 답했고, 9.5%(27명)의 경우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퇴사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복리후생과 노동권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트랜지션을 받기 위한 퇴사하는 경우 이는 **경력단절 및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트랜지션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회사 중 제도적으로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트랜지션 지원체계의 사내 도입을 권장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p. 323

트랜스젠더의 경우

중심 내용	1) 고용기회의 평등 - 트랜스젠더 고용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원자에게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고용 관행 개선
적용 내용	○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벌칙 및 과태료 등 조항이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또한 반영 ○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성별, 혼인여부, 병역사항 등 정보를 채용 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안 검토

트랜스젠더의 경우

<p>중심 내용</p>	<p>2) 직장 내 차별금지 - 트랜스젠더 관련 직장 내 차별금지에 관한 기업 내규 및 포용 정책 권장 -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및 폭력 발생시 구제 제도 마련 - 트랜스젠더 친화적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 존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p> <p>○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및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해고, 정년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절 혹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 현행 노동법의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성별경차성 등 또한 보호하도록 개정</p> <p>○ 국가기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내규 및 정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침, 편람 등 자료를 작성 및 배포</p> <p>○ 직장 내 차별이 발생했을 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제도, 특히 노동영역에 특화된 절차 등을 마련하거나 현행법상의 차별 구제제도를 보완</p> <p>○ 성소수자 친화적인 고용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주 및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p>
<p>적용 내용</p>	

트랜스젠더의 경우

<p>중심 내용</p>	<p>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 방지 근거법 마련 및 현행법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 입안 및 세부 지침 마련</p>
<p>적용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노동법 관련 차별금지 조항 등에서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직장내 괴롭힘은 아웃팅, 성별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성별 구분적 대우 및 성별표현에 대한 트짐 등을 포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표준취업규칙 등과 같은 정책 문서에 이를 명시하여 관련 입법적 조치를 보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을 위한 사내 구제제도를 마련하도록 고용주의 조사·조치 의무를 입법화○ 구제제도의 실효성 및 성소수자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성소수자 의제 관련 교육, 사내 성소수자 친화적 제도에 대한 적절한 고지, 피해자의 신원 비밀보장 특히 아웃팅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이 필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지침, 편람 등 자료를 개발해 보급

트랜스젠더의 경우

중심 내용	<p>3. 트랜지션 지원 관련 사내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랜지션 등 직장 내 트랜스젠더 복지 지침 마련- 트랜지션 관련 병가 및 의료 지원 등 복지 제공- 트랜스젠더 노동자 사생활 보호
적용 내용	<p>○ 인권 준중을 위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불이익을 겪지 않고 트랜지션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구축, 트랜지션을 받기 위한 퇴사하는 경우 이는 경력단절 및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트랜지션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p> <p>○ 국 내 회사 중 제도적으로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트랜지션 지원체계의 사내 도입을 권장하는 정책 시행</p> <p>○ 성별 트랜지션에 관한 지침 문서화-화장실 등 시설 사용, 개명 및 성별 정정 등 관련 사내 문서 표기, 트랜지션 관련 병가·휴직 및 보험 기준 적용, 사생활 보호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권고 (미 Human Rights Campaign)</p> <p>○ 의료권 보장의 일환-건강보험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진행</p>

트랜스젠더의 경우

<트랜스젠더 직원의 트랜지션을 지원합니다>*

*출처: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SOGI법정책연구소 (2018)

트랜지션 (transition)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트랜지션에는 외모의 변화, 수술 등 신체적 변화, 법적 성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지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살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복리후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본인이 원하는 트랜지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가능한 지원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모, 복장이 변화된 경우의 처우

트랜지션의 기본적인 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맞추어 외관상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가령 머리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증성적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옷차림을 하는 등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 복장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직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복장 규정 등을 적용해서 대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트랜스젠더의 경우

호르몬요법, 외과수술 등 의료적 조치에 대한 지원

의료적 조치를 통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호르몬요법을 받거나 가슴수술, 성기수술 등 외과적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의료적 조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성기성형수술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트랜지션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런 의료적 조치가 트랜스젠더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일반 병가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 휴직을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복직 시 다른 업무를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을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적 조치,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경우

트랜스젠더 직원이 법적 성별을 변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적 조치 등으로 일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지내게 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회사 내 관련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원 정보에서 사진과 성별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이름과 호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정보나 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인사 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반드시 성별을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는 한, 트랜지션을 하였다든 이유로 업무를 달리 주거나 부서를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대외적 업무에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업무 재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8년생 변희수에게 필요했던 것들

- 공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구제받을 권리
- (온라인)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국가 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 실직/복직시 일상 유지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제의 지원
- 커밍아웃한 공인으로서의 어려움을 인정받을 권리

나아가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존재의 인정·이해를 위한 시도들

성소수자 운동내 노동권의 중요성

트랜스젠더 의제의 일상 적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

트랜스젠더가 처한 군대 이슈의 현황과 과제 -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 관련 상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1. 들어가며

2020년 1월, 故 변희수 하사가 군 복무 중 커밍아웃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대중 앞에 섰다. 변 하사는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의 위법한 전역처분에 의해 강제로 군에서 쫓겨났다. 이후 인사소청, 전역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해 군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나 도중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소송은 유가족의 수계로 이어졌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변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변 하사가 전역처분 과정상의 위법성(여성인 MTF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판단 기준을 적용해 심신장애 전역을 결정한 것)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판결만으로 변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가 군에서 안전하게 복무하며 군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 하사의 커밍아웃을 전후로도 여러 트랜스젠더들이 군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와 성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가다 결국 군 복무를 포기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우리 군이 트랜스젠더가 복무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와 군이 맞닿아있는 이슈가 변 하사 케이스와 같이 군 복무 허용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입대 전 정체화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아예 입대가 불가능한 문제, 징병제 하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MTF의 문제, 복무 중 정체화로 인해 전역을 고민하고 있으나 제반 규정으로 인해 전역하지 못하는 문제 등 사안에 따라 트랜스젠더-군대 이슈의 성격과 당사자가 희망하는 바도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우리 군과 병무청 등이 그간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한 법령제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변희수 하사 사건 역시 이러한 법령 불비의 상태에서 군 당국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외면하며 무리한 위법 처분을 내린 데에서 기인한다)이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들이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군 관련 이슈의 현황을 짚어보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살펴보는 일은 변희수 하사 사건 승소를 넘어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소모적인 반인권적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절대적 수가 많지는 않으나,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군 관련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주기적으로 접수하여 상담 및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케이스들그린존 KTX진주역을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특징별 범주화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 관련 주요 이슈의 현황을 살피고 해결 방안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트랜스젠더에 관한 군 관련 주요 이슈 현황과 과제

(1)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는 병무 행정의 문제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의 다수는 입대 전 병무 행정과 관련된 문제와 맞닿아있다. 대부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별불일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받는 부적절한 질문에 관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내담자들은 모욕감, 두려움, 우울감,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상담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종종 접수되고 있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상담하고, 언론에 보도도 된 한 병무행정 관련 사건¹⁾은 트랜스젠더가 처한 병무 행정상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내담자는 MTF 트랜스젠더로, 성확정수술을 마치고 등록부정정을 완료한 상황이었으나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내담자는 병무청에 본인이 병역 의무자가 아닌데 왜 통지서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으나,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으러 와서 성별불일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역을 받으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내담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남성이 아닌 상황임에도 남성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장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1) 법적으로 이미 여성인데 병무청 "신체검사 받으러 와라" (MBC, 2021.1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458_34936.html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병무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병적 제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간 공론화가 된 적이 없었던 것 뿐이다.

당시 병무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세에 이르면 자동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는데, 내담자는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남성이 주민등록, 성명 정정 등 신상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무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상이동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통보 받지 않아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의 변동사항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통상 병역판정검사통지를 받은 이가 직접 병무청에 연락을 하거나, 해당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에서 전화를 하여 인지하면 증빙 서류를 받아 병적 제적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기저에는 우리 병무 행정 체계에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상상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무언가를 계속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병역준비역 편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트랜스젠더가 등록부정정의 절차를 밟아 행정상 성별을 정정하였음에도 병역을 면하는 일은 스스로 재차 성별을 정정하였음을 입증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끔 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행정 체계는 은연중에 트랜스젠더가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병역 면탈이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관련 행정의 불편과 불비 속에서 결국 불안과 불쾌로 고통 받는 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다.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 마땅히 병무 행정도 트랜스젠더 관련 업무를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으로 법규화, 제도화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병무 행정 상의 문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상태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상 여전히 질병 및 심신장애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1년 2월 국방부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해오던 ‘성주체성 장애’라는 용어를 ‘성별불일치’로 정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질병 및 심신장애의 하나의 분류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병역판정심사를 받을 때 스스로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당국에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치료력(6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있을 경우 면제)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 의학계가 공히 성별 불일치는 질병이나 장애가 아닌 ‘상태’라는 데에 합의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 병무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키나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에서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거나 많이 나가는 것을 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판정에 참고하듯, 트랜스젠더의 상태 역시 심신장애 기준에서 제하고, 치료력이 아닌 합리적 기준을 통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의사에 따라 병역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끔 하는 기준을 새롭게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2)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상 애로 사항에 관한 문제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의 특성 상 이미 교정시설 등에서 경험된 트랜스젠더의 생활상의 애로점이 군 부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부의 경우 개인 숙소를 쓰기 때문에 샤워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화장실 사용, 야외 훈련 시의 숙소, 샤워실 사용의 문제 등은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 (* 최근까지 군부대에 여자화장실 설치가 주요한 성평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전히 야외 훈련 시 여군 편의 시설 설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이 겪게 될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데 없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실제 트랜스젠더 간부들이 군 복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에 기반한 폭력, 따돌림, 아웃팅 등의 위험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유사한 규정으로 ‘부대관리훈령’ 상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기는 하나,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상정하고 만든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게 일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사실상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군 당국도 사기 및 부대 여건을 핑계삼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다.

(3) 군 복무 중 트랜스젠더 정체화에 따른 문제

병사, 간부가 군 복무 중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 케이스도 종종 접수된다. 병사의 평균 나이가 21세, 부사관의 평균 나이가 32세, 장교의 평균 나이가 33세(단기복무 장교는 26세) 임을 감안할 때 병사, 초급간부의 경우 20대 초~중반에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어 통상적인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정체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때문에 군 복무 중 트랜스젠더로 본인을 정체화하거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종종 접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 이후 접수된 상담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에서 비정상인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쫓겨나가거나(간부), 동료들로부터 폭행, 따돌림(병사)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불안감의 호소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폐쇄된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군인의 특성 상 마땅히 터놓고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점, 대부분의 군부대가 지방에 위치해 부대 근방에도 상담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 병영생활상담관 등에게 상담하였다가 부대에 소문이 나서 고초를 겪거나, 보고 받은 지휘관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한다. 때문에 대부분 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포기하고 전역을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간부의 경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 함과 동시에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민에 닿는 것이 곧 정체성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기 때문에 한층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역 절차를 밟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상 심신장애 기준과 달리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사법’ 상 심신장애 기준에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 위법한 처분이 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군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전역하기 위해서는 현역부적합심의 절차를 따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 및 인사계통에 본인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부터 당사자들의 고충이 시작된다.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있을지, 혹은 지휘관이나 인사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또는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쉽게 전역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원에는 우리 군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없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앞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군 복무 계속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상담, 보고, 신변 보호, 비밀 유지 등의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이 외에도 FTM 트랜스젠더의 자동 병역 면제 문제 등 다양한 트랜스젠더 군대 이슈가 있으나, 현재까지 군인권센터에는 상담 접수되고 있지는 않다.

3. 정리

트랜스젠더는 단일한 성격의 인구집단이 아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이지 100명의 트랜스젠더가 있으면 각기 다른 100명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변희수 하사처럼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트랜스젠더가 있는 한편, 군이라는 공간에서 불안과 위험을 느끼며 군 복무를 하고 싶어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있다. 이들을 획일화하여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정책과 제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군이 요구하는 시스젠더-헤테로섹슈얼의 ‘정상성’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소수자들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린 현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를 위시한 성소수자가 누구든 안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 법령을 마련하는 일은 이들이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태는 군과 관련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선택의 기회가 아예 거세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변희수 하사는 군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도 군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선택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생소한 울림을 우리 사회에 전했다. 이제 복무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1차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을 우리 군이 어떻게 마주하고 대할 것인지 섬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다.

당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故 변희수 하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일 시 2022. 2. 10. 14:00 ~ 16: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유튜브 실시간 중계)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수진 (서울동작을)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홍영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 관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군인권센터, 02-7337-119, mhrk@mhrk.org)
